

◆동작구 고시 제2025-172호

도시관리계획(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)
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9호(2019. 2. 14.)로 결정(변경)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5년 12월 일
동작구청장

I. 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

- 1. 실효일자 : 2024. 2. 15.(고시일: 2019. 2. 14.)
- 2. 실효사유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실효된 지구단위계획 내용
 -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9호(2019. 2. 14.) 지정(계획)된 노량진동 128-2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

- 1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 -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 성 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주거 지역	소계	3,790.0	-	3,790.0	100.0	-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3,790.0	3,790.0	100.0	-
	준주거지역	3,790.0	감) 3,790.0	-	0.0	-

○ 용도지역에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위치	용도지역		면적(㎡)	용적률	결정사유
		기정	변경			
-	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	준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3,790.0	400%	•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5년 이내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실효됨에 따라 용도지역 환원

2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○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(㎡)	획지		비고
				위치	면적(㎡)	
기정	—	—	3,790.0	동작구 노량진동 128-2번지	3,790.0	
변경	폐지					

○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결정내용	결정사유
기정	• 획지계획 신설 : 3,790.0㎡	• 『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획지계획을 결정(신설)
변경	• 획지계획 폐지 : 3,790.0㎡	• 역세권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실효됨에 따라 획지 폐지 및 환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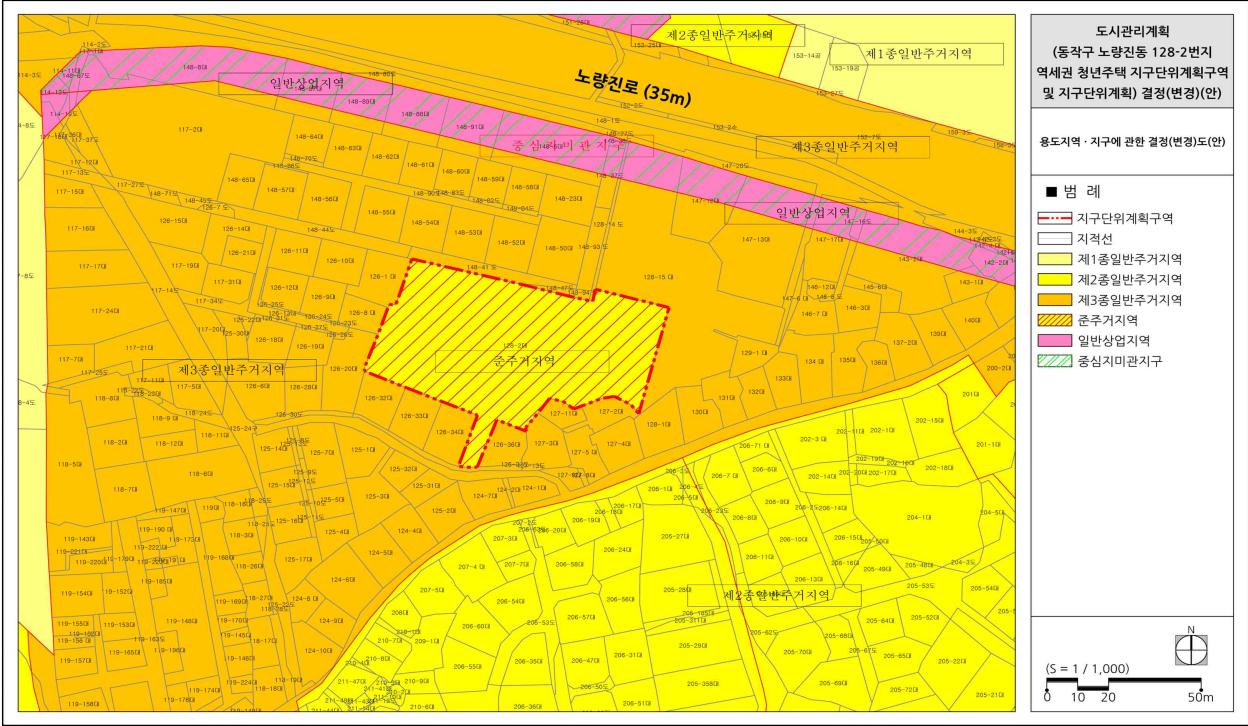
Ⅲ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(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,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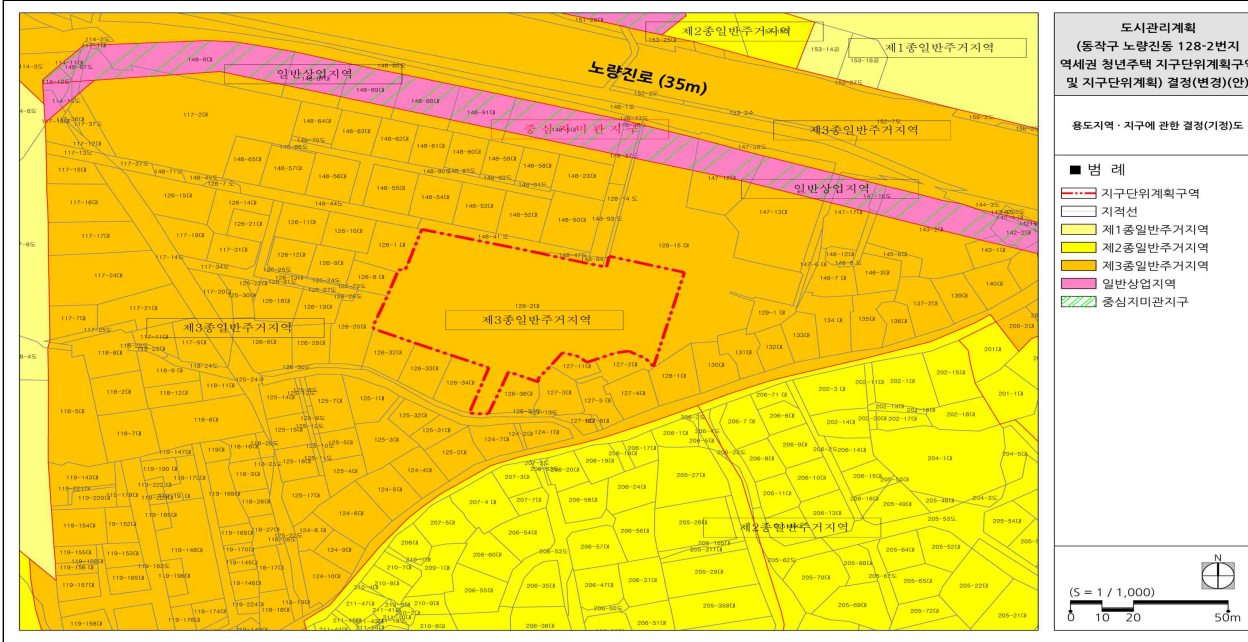
Ⅳ.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동작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20-194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관계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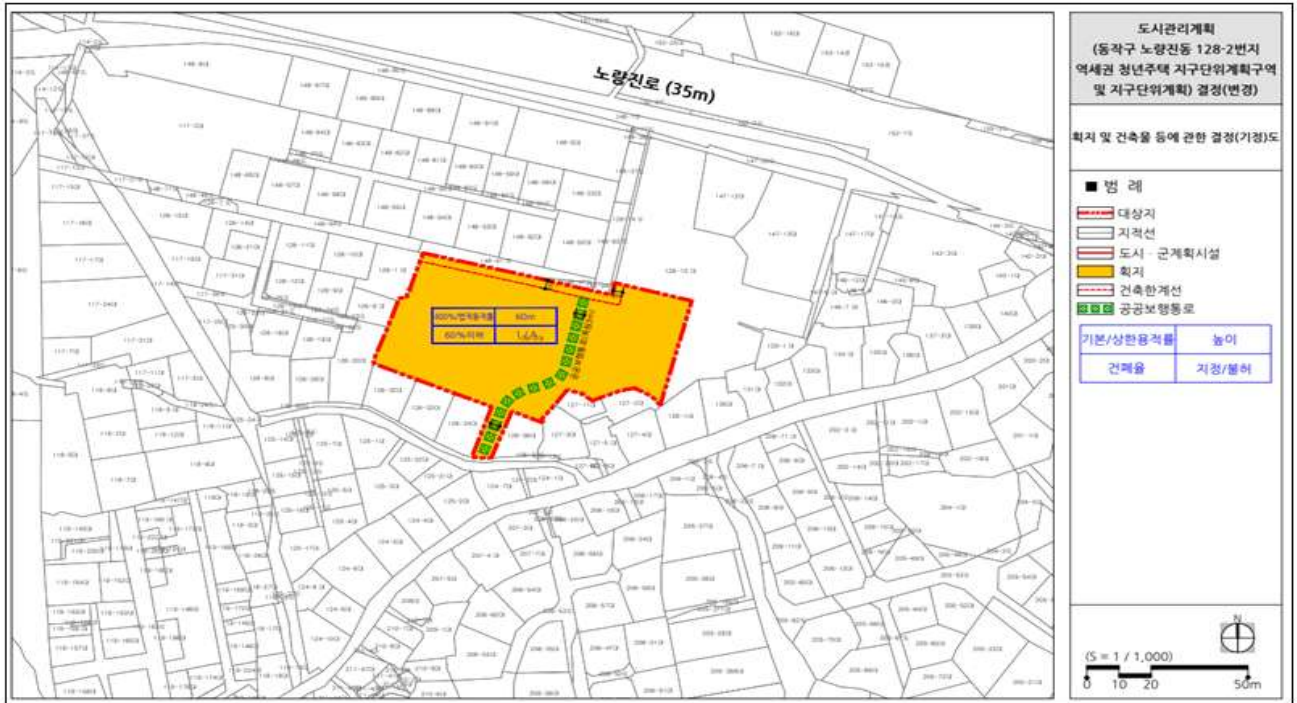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

■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